

# 環境保護를 위한 國際通商規制의 合法性\*

李信珪\*\*

- 
- I. 序論
  - II. 環境保護에 관한 國際通商規制手段
  - III. 環境保護에 관한 通商規制의 法的 根據
  - IV. 環境保護를 위한 通商規制의 合法性
  - V. 結論
- 

## I. 序論

환경문제의 국가간 상호연관성이 심화됨에 따라 지구환경 및 지역환경보호를 위한 국가간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UN의 주도하에 1972년 스톡홀름에서 채택된 UN 인간환경선언, 1982년 세계자연헌장(The World Charter for Nature) 및 1992년 '리우 환경선언'의 탄생을 보게 되었다. 1992년 6월 3일부터 리우에서는 UN 환경개발회의의 주최로 '위기에 처해 있는 지구환경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둘러싼 남·북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풀기 위하여 환경과 개발에 관한 UN 환경회의가 개최되어 '리우 환경선언'(Rio Declaration)과 실행계획이라 할 '의제(Agenda) 21' 및 열대림보호를 위한 '산림보호원칙'을 채택하였고 그밖에 '기후변화협약', '지구온난화방지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환경조약이 채택되었다. 리우선언은 "환경을 위한 통상규제조치가 국제무역에 대한 자의적이고 부당한 차별수단이나 위장된 규제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선언하였으며(원칙 12) 동 선언은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범세계적인 대응방향과 원칙에 대한 국제합의라는 점

---

\* 本論文은 1998學年度 청운대학교 學術研究費 支援으로 이루어졌음.

\*\* 청운대학교 國際貿易情報學科 專任講師.

에서 앞으로 국내 및 국제환경규범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지구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논의된 많은 국제환경협약들은 통상규제를 협약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고 국제환경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환경협약은 협약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나 환경보호를 위해 비당사국에 대해 통상규제를 가함으로써 단순한 환경보호차원을 넘어 국제통상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톡홀름 인간환경회의에서 자극을 받아 환경보호와 통상문제를 다루기 위해 설치되었던 GATT 환경작업반이 1991년부터 본격적인 환경보호와 통상문제의 합법성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1994년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무역환경위원회 준비위원회를 거쳐 WTO각료회의 산하에 설치된 무역환경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CTE)를 설치하여 리우선언 및 의제 21을 통해 국제적 합의가 형성된 무역과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다. GATT 제20조에서는 예외규정을 통해 환경보호를 위한 통상규제를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WTO의 주요 협정에서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통상규제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국제환경협약과 WTO 체제상의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통상규제의 합법성을 고찰하고 환경보호에 관한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II. 環境保護에 관한 國際通商規制手段

### 1. 경제적 수단

환경기준이 느슨한 국가에서 수입된 제품은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의 제품에 비하여 일종의 부당한 숨겨진 보조금(hidden subsidy)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환경기준의 차이만큼 상계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각국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sup>1)</sup>

1) 이영준, 국제환경법론, 법문사, 1995, p. 259.

경제적 수단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①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기업평균연비(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 CAFE)규정,<sup>2)</sup> 일정기준 이상의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항공기에 의한 소음 포함) 및 쓰레기 처분 등에 부과되는 배출부과금(emission charge) ② 제품수명주기의 각 단계에 부과하는 제품부과금(product charge) ③ 정부당국이 허가수수료, 등록수수료 및 통제수수료의 형태로 부과하는 행정부과금(administrative charge) ④ 폐기물의 회수·처리비용을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제품의 제조·유통과정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폐기물발생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한 예치금제도(deposit refund system) ⑤ 오염유발정도가 낮은 제품 및 공정의 사용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재정유인제도(fiscal incentive) ⑥ 무상증여, 장기저리대출(soft loan), 세액공제(tax rebate), 감가상각(depreciation allowances) 등의 형태로 지급되는 보조금(subsidy) ⑦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⑧ 배출허용할당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배출거래권제도(marketable permit) ⑨ 시장기능 및 소비자의 선호에 의하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마크제도(environmental labelling) 등이 있다.

## 2. 규제적 수단

규제적 수단의 정책으로는 첫째, 특정상품 및 성분의 사용규제 및 금지를 들 수 있다. 오존층을 파괴하는 염화불화탄소(CFC), 할론(Halon), 사염화탄소 등과 같은 화학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몬트리얼의정서’, 폭발성, 인화성, 중독성을 갖는 유해폐기물의 국경간 이동을 규제하는 ‘바젤협약’,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 동식물의 수출입을 제한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등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특정 공정의 생산방법에 대한 규제로 환경오염 및 피해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정 및 생산방식(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 PPMs)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PPMs규정의 유형은 제품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관련 PPMs와 제품의 특성에 영향이 없는

---

2) 미국의 ‘기업평균연비’제도란 자동차생산업체나 수입판매상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종류의 자동차의 평균연료 효율성이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벌금형식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제품비관련 PPMs로 구분된다.

셋째, 배출기준, 표준, 기술규정 등과 같은 강제규범을 들 수 있다. 기술규정에 의한 무역장벽은 미국의 자동차 배기ガ스 기준강화나 가전제품의 기술기준 강화 등과 같이 어떤 특정상품에 대하여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는 요건이나 기준을 설정하고 수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며, 표준규격제도는 강제적으로 준수할 필요는 없으나 자국의 표준규격획득제품에 대한 신뢰성이 상품수요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제품수출시 수입국 규격획득을 위한 추가적 부담이 발생한다.

넷째, 자원사용할당량(resource use quota)으로 자국내 폐기물발생의 억제를 위하여 국가별로 제품포장의 재질 및 방법 등을 규격화하여 자국의 규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통상규제수단으로 사용한다.<sup>3)</sup>

다섯째, 유해물질배출자료 제출의무, 환경영향평가 시행의무, 검사 및 인증 절차(ISO 14000)에 관한 제출의무 등과 같은 정보공개의무(information generating requirement)이다.

여섯째, 사전통보인증절차(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로 유해상품, 폐기물, 위기동·식물의 수출입 또는 사용을 통제하거나 금지하기 위해서 어느 한 국가가 채택한 국내조치에 대한 정보를 국제적으로 통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 III. 環境保護에 관한 通商規制의 法的 根據

#### 1. 國제환경협약

WTO 산하에 환경과 무역위원회가 GATT와 같은 전세계국가를 상대하는 일반적 환경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국제환경협약이 환경관련 통상규제의 법적 토대가 되었다. 1996년 1월 1일 현재 채택된 국제환경협약은 150개인데 이중 국제통상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협약은 24개이다.<sup>4)</sup> 우리 나라와 관련된

3) 이에 대한 사례로는 독일이 제조업자 또는 유통업자에게 포장폐기물의 회수와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덴마크는 포장재질 및 규격을 규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제품포장기준 및 포장재의 재질 등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4) E. Petersman, *International and European Trade and Environmental Law after*

주요 국제환경협약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얼 의정서,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및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등이다.

### (1)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얼 의정서

'몬트리얼 의정서'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것으로 판명된 염화불화탄소(CFC,<sup>5)</sup> 프레온가스)의 소비와 생산을 규제하기 위해 '비엔나협약'의 시행을 위해 구체적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두 번 개정되었는데 제1차 개정의정서는 1990년 6월 30일에 채택된 '런던의정서'이고 제2차 개정의정서는 1992년 11월 25일 채택된 '코펜하겐의정서'이다. 동 의정서는 개정될수록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대상물질이 추가되고 규제일정도 앞당겨졌다.

#### (가) 규제대상

규제대상물질 및 규제원칙은 '몬트리얼의정서' 채택 당시 5종류의 CFC와 3종류의 할론(Halon)이 지정되어 1989년 헬싱키선언에서 늦어도 2000년까지 CFC를 전면폐지하기로 하였다. '런던개정의정서'에서 기존물질의 삭감일정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져 12개의 신규규제물질로 10종류의 CFCs, 사염화탄소 및 메틸클로로포름이 추가되었으며 34개의 HCFCs를 보고를 요하는 과도물질로 편입하였다. '코펜하겐의정서'에서는 삭감일정에 없던 HCFC 등 과도물질이 규제대상물질로 전환되고 CFCs의 생산 및 소비의 전면중지시기를 현행 2000년에서 1996년으로 단축하고 규제물질을 추가하여 총 95종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CFC의 사용량이 적은 개도국은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서내 부속서 A 물질(CFC-11 등 8종)의 경우 국민 1인당 0.3kg 이내에서 선진국의 규제일정으로부터 1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1995년 12월 제7차 당사국총회에서는 HCFC와 메틸브로마이드의 규제일정감축이 논의되어 '코펜하겐의정서'에서 2030년까지 전폐하기로 정했던 HCFC의 규제일정을 선진국은 2020년까지 전폐하기로 하였으며 개도국의 규

---

*the UR*, Kluwer Law International, 1995, pp. 155~161.

5) CFC는 냉매, 전자제품세정제, 발포성형제로서 인간생활의 주요 부분을 지탱해 주고 있는 화학물질이다(Gribbin, "The Ozone Layer", *New Scientist*, May 5, 1988, pp. 3~4).

제일정을 정하여 2016년부터 2015년 수준으로 소비를 동결하고 2040년까지 전폐하기로 결정하였다. 메틸브로마이드의 경우 선진국은 2001년까지 25% 감축, 2005년까지 5%감축, 2010년까지 일부 농업용을 제외하고는 사용을 전폐하기로 하였으며, 개도국의 경우 2002년부터 1995~1998년 사용량의 평균치로 동결하였다. 우리 나라는 1993년에 1인당 CFC의 소비량을 0.3kg으로 줄이는 개도국 특례조항 적용국가로 분류되어 CFCs 감축의무를 10년간 유예받고 있어 2005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다자기금의 납부의무도 면제받게 되었다.

#### (나) 통상규제조치

'몬트리얼의정서'는 CFC와 Halon을 생산하거나 이를 이용해 제품을 만드는 많은 국가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비체약국에 대한 통상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데(동 의정서 제4조) 이에 대한 주요 규제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 1월 1일부터 비체약국으로부터 '부속서 A'에 포함된 규제대상물질의 수입을 금지하고(제4조 1항) 이 조항 발효 후 비체약국으로부터 부속서 B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수입을 금지한다. 또한 1993년 1월 1일부터 체약국은 의정서의 비체약국에 부속서 A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수출을 금지하고 이 조항의 발효 후 1년부터 체약국은 비체약국에게 부속서 B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수출을 금지한다.

둘째, 1992년 1월 1일까지 체약국은 협약 제10조의 철차에 따라 부속서 A에 속하는 규제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목록을 상술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는 발효 후 1년 안에 동 의정서의 비체약국으로부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다. 또한 1994년 1월 1일까지 체약국은 이 의정서의 비체약국으로부터 부속서 A 내 규제물질을 함유하지 않았으나 이를 사용해 만든 제품의 수입금지나 제한에 관하여 타당성을 결정한다.

셋째, 각 체약국은 동 의정서의 비체약국에 대하여 규제물질의 생산기술 및 이용기술의 수출을 최대한 억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체약국은 규제대상물질의 생산을 증진시킬 수 있는 물품, 장비, 기술을 비체약국에 판매하는데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원조나 차관을 주거나 또는 보험을 공제해서는 안 된다.

넷째, 상기 셋째 규정은 규제물질의 봉쇄, 회수, 재이용 및 파기방법을 개선하고 대체물질개발을 촉진하거나 여타의 방법에 의해 규제물질 삭감에 기여하는

제품, 장치, 공정 및 기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2)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유해폐기물이 국경간 이동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인류 건강에 대한 위협과 환경파괴를 위해 채택된 바젤협약<sup>6)</sup>은 선진국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개도국에서 처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 (가) 규제대상

바젤협약에서 폐기물은 '국내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거나 처리되어질 예정이거나 처리가 요구되는 물질'로 규정하고 적용대상 폐기물은 유해성 폐기물과 기타 폐기물로 구분된다.<sup>7)</sup> 동 협약에서는 이 두 가지 부류를 기초로 하여 총 47 종의 폐기물을 분류하고 있으나 분류내용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구체적인 규제대상품목이 어떤 것인가를 명확하게 해석하고 있지 않다. OECD와 EU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폐기물을 크게 3가지 그룹으로 구분하고 총 187 개 품목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놓았다. 이에 따르면 Green List는 주로 재활용 목적의 폐기물이 대부분이며 Amber나 Red는 처리목적이 대부분이다. 이에 대한 분류는 다음과 같다.

<표 2-1> OECD 폐기물 분류

구 분	폐 기 물 의 종 류
Green Li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철, 파지, 플라스틱, 고무 등 13종 108개 품목</li> <li>. H.S. No.가 부여되지 않은 알루미늄스킹잉, 배연탈황석고, 소모된 촉매 등 16개 품목</li> </ul>
Amber Li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연재, 납재, 구리재, 가죽재 등 15개 품목</li> <li>. H.S. No.가 부여되지 않은 연소재, 원래용도에 부적합한 폐유, 부동액, 이온교환수지 등 43개 품목</li> </ul>
Red Li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B함유 폐기물, 디벤조퓨란(디옥신 등), 석면, 세라믹섬유, 납화합물 Sludge 등 5개 품목</li> </ul>

6) 동 협약은 1989년 3월 스위스 바젤에서 최종 의정서에 105개국이 서명함으로써 채택되었고 1992년 5월 15일에 발효된 '유해폐기물의 국경이동 및 처리에 관한 바젤협약(The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 and Their Disposal: 이하 '바젤협약'이라 함)'이 제결되었다. 1995년 9월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84개국이 가입되었으며 우리는 국내적으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1992년 12월 8일자로 제정, 1994년 5월 29일 아래 시행되었다.

7) 김필홍, "바젤협약과 그 영향 및 대응방안", 「환경보전」, 1994. 4. pp. 10~11.

## (나) 통상규제조치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경우가 아닌 한 국가간 이동을 허용하되 이에 사전통고동의(Prior Informed Consent : PIC)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정교한 규제조치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내용은 다음 <표 2-2>와 같다.

&lt;표 2-2&gt; 바젤협약에 대한 통상규제조치

규제유형	규제조치
수출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위 60도 이남지역인 남극지역에 대한 수출금지(협약 제4조 6항)</li> <li>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수출금지(협약 제4조 5항)</li> <li>국내법으로 모든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한 국가에의 수출금지(협약 제4조 1항)</li> <li>수출국의 입장에서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처리하지 못할 것으로 여겨지는 국가에 대한 수출금지(협약 제4조 2항)</li> </ul>
규제하의 수출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국의 수입국에 대한 사전통보(수출이유, 수출자, 생산자, 문제의 폐기물 발생장소 및 과정, 폐기물의 성질과 포장, 국가간 이동경로, 처리장소, 처리자, 처리방법) (제6조 1항)</li> <li>상기 정보에 대한 수입국의 입장을 서면으로 회신(제6조 2항)</li> <li>통과국도 수입국과 동일한 정보수령의무(제6조 1.2항, 제7조)</li> <li>통과국이 정보수령후 60일 이내 통과가부통보(제6조 4항)</li> </ul>
비체약국 과의교역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약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을 비체약국으로부터 수입이나 수출금지(협약 제4조 5항)</li> <li>체약국과 비체약국간의 교역이 양자적, 다자적 또는 지역적 협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허용(협약 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정이 바젤협약 전에 체결된 경우</li> <li>- 협정이 바젤협약 이후에 체결되었더라도 바젤협약보다 더욱 엄격한 경우</li> </ul> </li> </ul>

## (3)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CITES(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는 무제한적인 상업거래가 야생 생물종의 보존에 큰 위협으로 되고 있다는 인식하에 멸종의 위기에 있는 야생 동·식물과 그 제품의 국제거래를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협약은 1973년 3월 3일 워싱턴에서 채택되었으며 1975년 7월 1일 발효하였고, 우리 나라는 1993년 10월에 가입하였다.

## (가) 규제대상

동 협약은 부속서 I, II, III의 부표가 있고 규제정도에 따라 조약대상의 종

이 결정된다. 부속서 I은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것(협약 제2조 1항)으로 이는 과학목적 등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 국제거래가 금지된다. 부속서 II는 국제거래를 규제하지 않을 경우 장래 멸종할 가능성이 있는 종(협약 제2조 2항 a)이며 부속서 III은 체약국이 자국내에서 종의 지나친 이용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것이다(협약 제4조).

#### (나) 통상규제

CITES가 채택하는 규제는 어떠한 국제적인 범죄의 유형을 구성하거나 위반에 대한 처벌을 과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수출국과 수입국에 의하여 실시되는 허가를 통해서이다. 즉 CITES는 단지 국경을 넘는 야생 동·식물의 교역에만 적용될 뿐이며 체약국의 영토내에서 생기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통상규제에 대한 사항은 다음 <표 2-3>과 같다.

<표 2-3> CITES에 대한 통상규제

규제대상	규제 내용
부속서에 포함된 종의 표본거래	<p>수출입허가 없이는 수출입금지(협약 제3조)</p> <p>① 수출허가서 발급요건(협약 제3조 2항)          가. 표본의 수출이 종의 생존에 해롭지 않을 것          나. 표본이 동·식물의 보호에 관한 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          다. 표본이 상해·건강의 피해 또는 학대위험이 최소화되어 선적          라. 표본에 대한 수입허가서가 발급되었다고 인정한 경우</p> <p>② 수입허가서 발급요건(협약 제3조 3항)          가. 표본 수입이 관련종의 생존에 해롭지 않아야 함          나. 표본 수령예정자가 표본을 수용하고 보호할 능력 보유할 것          다. 수입된 표본이 상업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것</p> <p>③ 재수출증명서 발급요건(협약 제3조 4항)          가. 협약의 규정에 따라 재수출국으로 수입되었다고 인정된 경우          나. 표본이 상해·건강의 피해 또는 학대위험이 최소화되어 선적          다. 수입허가서가 살아 있는 표본에 대해 발급되었어야 함</p> <p>④ 반입증명서 발급요건(협약 제3조 5항)          가. 반입이 종의 생존에 해롭지 않을 경우          나. 살아있는 표본의 수령예정자가 수용하고 보호능력 보유          다. 표본이 상업목적에 이용되지 않을 것</p>
부속서 II에 포함된 종의 표본거래	<p>① 수출허가서 발급요건          표본에 대한 수입허가서가 발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 2항 라)를 제외하고 부속서 I과 동일</p> <p>② 재수출증명서 발급요건          수입허가서가 살아있는 표본에 대해 발급되었어야 하는 것.          (제3조 4항 다)을 제외하고 부속서 I과 동일</p> <p>③ 반입증명서 발급요건          반입국의 관리당국에서 표본이 상업목적에 이용되지 않을 것          (제3조 5항 다)을 제외하고 부속서 I과 동일</p>
부속서 III에 포함된 종의 표본거래	<p>수출허가서 사전 발급요건          가. 표본이 동·식물보호에 관한 수출국의 법을 위반하지 않고 획득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살아있는 표본이 상해·건강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이 최소화하도록 준비되어 선적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제5조 2항)</p>

## 2. GATT 규정

국제선언이나 국제협정에서 환경과 국제통상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킨 규정은 거의 없지만 이에 따른 분쟁시 원용할 수 있는 규정은 GATT 제 20조와 1979년 동경라운드에서 채택된 'GATT 표준화협정'이다. GATT 제 20조는 일반적 예외조항으로 동·식물의 보호나 천연자원의 보존을 위해 통상규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동 조항에 대한 예외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제통상 조치가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국가간에 자의적이며 부당한 차별수단으로 부과되지 않으며 통상조치가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전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예외적 통상규제조치는 최혜국대우원칙(제 1조)과 내국민대우(제 2조) 및 수량제한금지원칙(제 11조)에 부합되게 취해져야 한다.

인간보전과 안전 및 동식물의 보전을 위해 통상규제를 허용하고 있는 GATT 제 20조 (b) 항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규제조치가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행해지고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하고 다른 대체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필요성'(necessary)을 충족해야 하며 적용범위는 법관할권내에 국한되어야 한다. 고갈성 천연자원의 보전을 위한 통상규제조치를 허용하고 있는 동 조 (g) 항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조치가 무차별적으로 행해져야 하고 자원보전에 우선적인 목적이 주어져야 하며 규제조치 시행국의 법관할권내의 자원보전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 2. WTO 협정

WTO는 UR 협상결과를 구현하는 일체의 문서로 이는 (i) UR 최종의정서와 동 의정서에 첨부된 (ii) WTO 협정과 (iii) 각료선언 및 결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통상규제와 관련된 규정은 부속서 1에 포함된 기술장벽협정(TBT 협정), 위생 및 검역조치협정(SPS 협정),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무역관련 지적소유권협정 및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등이 있다.

### (1) 기술장벽 협정

기술장벽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TBT)은 국가간 기술표준의 차이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회원국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국제기준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이나 환경보호와 같은 정당한 목적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통상규제가 인정되나 필요한 이상으로 통상규제를 피해야 한다.<sup>8)</sup> 동 협정은 국제표준이 존재하거나 완성이 임박한 경우 기후적, 지리적 요소나 근본적인 기술문제 때문에 그러한 국제표준이나 국제표준의 관련부분이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수단일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자국의 기술규정의 기초로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문제의 긴급성과 합리적 이유를 다른 회원국에게 통보하고 상대국의 의견을 논의할 수 있다.<sup>10)</sup> 공산품과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상품이 이 협정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sup>11)</sup> WTO TBT 협정은 안전, 건강 및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예의적 인 절차적 규정을 인정하고 있으며<sup>12)</sup> 1979년 GATT 표준화협정은 '공정 및 생산방법(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 PPMs)에 대한 규제를 제한하지 않 있으나 WTO TBT 협정은 이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으며 단지 제품에 관련된 PPMs에만 적용될 뿐 제품에 관련이 없는 PPMs에는 적용되지 않는다.<sup>13)</sup>

### (2) 위생 및 검역협정

WTO 위생 및 검역협정(WTO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SPS)은 인간,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sup>14)</sup> 동 조치가 상기 목적에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적용되고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며 또한 충분한 과학적 근거없이 유지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또한 SPS 협정의 조치가

8) TBT 협정 제 2조 2항, 제 5조 4항.

9) TBT 협정 제 2조 4항.

10) TBT 협정 제 10조.

11) TBT 협정 제 1조 3항.

12) TBT 협정 제 2조 10항.

13) Simonetta Zarrilli, "Trade and Environment, The Rules, Panels and Dabate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orld Competition, Law and Economic Review*, vol. 20, No. 3, 1997, p. 98.

14) SPS 협정 제 2조 1항.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 있는 회원국들을 자의적이고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으며 국제무역에 위장된 제한이 되지 않아야 한다.<sup>15)</sup> 동 조치는 1994년 GATT 제 20조 (b) 항의 규정에 따른 회원국의 의무에 합치되며<sup>16)</sup> 위생 또는 식물위생보호의 목적상 기술적, 경제적인 타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위생 또는 식물위생보호의 적정수준을 달성하면서 무역에 대한 제한이 현저히 적은 다른 조치가 없는 경우 동 조치는 필요한 정도 이상의 무역조치가 아님을 규정하고 있다.<sup>17)</sup>

### (3) 농산물협정

WTO 농산물협정의 장기적인 목적은 공정하고도 시장지향적인 농산물교역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농업보조 및 보호를 실질적이고 점진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본 협정의 규정은 1994년 GATT 및 다른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협정(MATs)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며(협정 제 21조 1항) 회원국의 주요 의무로는 (i) 시장접근 (ii) 국내보조 및 수출보조금규제 (iii) 수출금지 및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허용대상보조금의 일반적 기준은 무역왜곡 효과나 생산에 미치는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며 당해 보조가 소비자로부터 소득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면서 생산자에 대한 가격지지효과가 없어야 된다.(부속서 2의 1) 감축의무로부터 면제되는 정책으로는 환경계획관련 연구, 환경계획과 관련된 하부구조사업을 포함하는 하부구조서비스 및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등과 같은 정부의 일반서비스 계획(부속서 2의 2)과 명백하게 정의된 정부의 환경 또는 보존계획 등과 같은 환경계획에 따른 지불을 들 수 있다.(부속서 2의 12)

### (4)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은 보조금의 종류를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ies), 상계대상보조금(actionable subsidies), 허용보조금(non-actionable subsidies)으로 구분하여 수입국은 허용보조금에 의해 수해를 받은 상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

15) SPS 협정 제 2조 2항, 3항.

16) SPS 협정 제 2조 4항.

17) SPS 협정 제 5조 6 항.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sup>18)</sup>

기업에 대한 많은 제약과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법 및/또는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새로운 환경요건에 기존시설<sup>19)</sup>의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으로서의 환경보조금은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되어 상계조치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충족되어야 할 요건으로는 (i) 일회적인 비반복적 조치이며 (ii) 적용비용의 20%로 한정되며 (iii) 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원대상 투자의 대체 또는 운영비용을 보전하지 않으며 (iv) 기업의 공해 및 오염의 감축계획에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그에 비례하며, 달성될 수 있는 제조비용의 절감을 보전하지 않고 (v) 새로운 설비 및/또는 생산공정(production process)을 채택할 수 있는 모든 기업이 이용 가능할 것 등이다.(협정 제8조 3항 c)

#### (5)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WTO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TRIPs)은 그 동안 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세계저작권협약 등의 국제협약에 의해 규율되던 지적재산권의 보호문제를 WTO의 다자간 규범으로 편입된 것으로 모든 회원국들에게 환경기술을 포함한 연구, 발명, 새로운 기술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20)</sup> 특허를 소유한 국가들이 효과적인 지적재산권의 보호제도를 가지고 있는 타 국가들에게 자발적으로 기술이전(technology tranfer)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기술의 발명(innovation)과 이전은 상호 보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sup>21)</sup> 특허의 대상으로 모든 기술분야에서 물질(products) 및 제법(processes)에 관한 어떤 발명도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의 이용가능성이 있으면 특허획득이 가능하고 발명지, 기술분야, 제품의 수입 또는 국내생산 여부에 따른 차별없이 특허(patents)가 허용되고 특허권이 향유된다.<sup>22)</sup> 하지만 동 협정은 특허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적은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즉, 회원국 영토내에서 상업적 이용의 금지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를 포함, 필요한

18) Simonetta Zarrilli, *op. cit.*, p. 101.

19) '기존시설'은 새로운 환경요건이 부과되는 때에 최소한 2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20) Simonetta Zarrilli, *op. cit.*, p. 103.

21) WTO, Environment and Trips, WT/CTE/W/8.8 June 1995.

22) TRIPs 제 27 조 1 항.

경우 공공질서 또는 공서양속을 보호하거나 또는 환경에의 심각한 피해를 회피하기 위해 발명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외는 동 이용이 자국의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해서는 안된다.<sup>23)</sup> 하지만 환경보호와 관련하여는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원국은 (i)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방법, 요법 및 외과적 방법 (ii) 미생물 이외의 동물과 식물, 비생물학적 및 미생물학적 제법과는 다른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을 위한 제법 등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통상규제에 따른 분쟁시에 원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24)</sup>

#### (6)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 GATS)은 GATT 제 20 조 (b)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일 경우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간에 자의적 또는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이 되거나 혹은 서비스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이러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sup>25)</sup>

## IV. 環境保護를 위한 通商規制의 合法性

### 1. 국제환경협약과 GATT/WTO 협정의 환경관련규정의 충돌

다자간 국제환경협약은 유효한 국제협약이기 때문에 가입국의 의무면에서는 GATT 및 WTO의 규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수출입허가제도와 같은 통상규제수단을 사용하는 국제환경협약의 통상규제는 무역자유화를

---

23) TRIPs, 제 27 조 2 항.

24) TRIPs, 제 27 조 3 항.

25) GATS 제 14 조 b 항.

원칙으로 하고 있는 WTO와 상충되며 환경보호에 대한 통상규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GATT 및 WTO의 규정들도 국제환경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와는 상충된다. 환경보호를 위한 통상규제의 합법성 문제는 (i) 국제환경협약에 가입하고 있는 양당사국간의 이행을 위한 통상규제조치와 GATT 및 WTO 규정과의 합법성 (ii) 국제환경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대국에게 통상규제를 취하는 일방적 통상조치와 GATT 및 WTO 규정과의 합법성에 대한 문제로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에 대한 우선적용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환경협약과 GATT 및 WTO 관련규정이 상충될 경우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합리성은 1969년 채택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의 규정에 의해 방향이 정해질 수 있다.<sup>26)</sup>

첫째, 국제환경협약에 가입하고 있는 양당사국간 협약의 이행을 위한 통상규제조치와 GATT/WTO 규정과의 합법성문제에 대해 환경협약에 가입하고 있는 어느 일방이나 쌍방이 WTO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 분쟁당사자가 모두 가입하고 있는 국제환경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국제환경협약에 가입하고 있는 쌍방이 모두 WTO의 회원국일 경우 분쟁당사자들은 신법우선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협약 중 국제통상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몬트리얼 의정서, 바젤협약, CITES 들보다 나중에 규정된 WTO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향후 성립되는 다자간 국제환경협약의 규정이 존재할 경우에는 동 규정들이 WTO의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둘째, 국제환경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통상규제를 가하는 일방적 통상조치<sup>27)</sup>와 GATT 및 WTO 규정과의 합법성 문제는 환경협약 비당사국

- 
- 26)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 30조는 국제조약간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서로 모순 되는 조약간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조약이 구조약 또는 신조약에 따를 것 또는 구조약과 신조약이 저촉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약 또는 신조약이 우선한다.(제 2 항) 구조약의 모든 당사국이 동시에 신조약의 당사국이지만 구조약이 신조약의 체결로 인하여 종료 내지 정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약은 그 규정이 신조약의 규정과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된다.(제 3 항) 신조약의 당사국이 구조약의 모든 당사국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① 양조약의 당사국간에는 신조약의 규정과 이와 양립하는 구조약의 규정이 적용되며, ② 양조약의 당사국과 어느 한 조약만의 당사국간에는 그 양국이 다같이 당사국인 조약이 그들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한다(제 4 항).
- 27) OECD의 분류에 의하면 환경관련 국제통상규제조치의 법적 기초는 (i) 국제환경협약에 의한 의무적 부과 (ii) 국제환경협약에 의한 허용 (iii) 국제환경협약과 관련된 경우 (iv) 국내법에 의거한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i)과 (ii)는 국제환경협약에 의해 정당화되며 (iii)과 (iv)는 일방적 조치이다.

에 대한 통상규제조치가 WTO 체제상 정당한가에 관한 것으로 분쟁당사자 쌍방이 WTO 회원국인 경우와 어느 일방이 WTO 비회원국인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 보아야 한다. 국제환경협약의 당사국인 규제국과 비당사국인 상대국의 쌍방이 WTO 회원국인 경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규정에 따라 GATT/WTO협정이 적용된다. 이 경우 국제환경협약을 근거로 한 통상규제는 다음에 논의되는 통상규제의 합법성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합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제환경협약의 당사국인 규제국과 비당사국인 상대국의 쌍방이 GATT/WTO 비회원국인 경우 통상규제는 WTO의 기본규정인 최혜국대우 및 수량제한 금지조항에 위반된다. 이 경우 GATT 제20조의 예외조항과 부합되기 위해서는 규제국은 국제환경협약의 회원국이지만 상대국은 비회원국이기 때문에 제20조 전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국가이어야 한다는 단서조항과는 다른 조건이므로 비당사국에 대한 통상규제는 제20조에 부합되는 것으로 확대해석이 가능하다.<sup>28)</sup> 따라서 비회원국에 대한 일방적 통상규제조치는 합법성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WTO 규정하에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입장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GATT 제25조 5항에 의한 면제(waiver) 조항의 적용여부가 판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국제환경협약의 당사국인 통상규제국과 비당사국인 상대국의 일방이 WTO 비회원국일 경우 발생되는 분쟁은 양당사자를 구속시킬 수 있는 합법적인 법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법의 일반원칙인 비차별원칙이 적용되어 통상규제의 불합법성(비당사국의 입장)과 통상규제의 적법성을 제시하여(규제국의 입장) 자국의 합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 2. 환경관련 통상규제의 합법성 요건

### (1) 무차별원칙

무차별(non-discrimination)원칙<sup>29)</sup>은 WTO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 비교우위

28) J. Cameron and J. Robinson, "The Use of Trade Provisions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and their Compatibility with the GATT", *Yearbook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vol. 2, 1992, p. 14.

29) 무차별원칙을 규정한 조항으로는 리우선언 '원칙 12', '의제 21', GATT 제1조, 제3조, 'WTO 설립협정' 전문, 'WTO TBT 협정'; 전문, 제2조 1항, 제5조 1항,

를 기초로 한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기여하며 차별적인 통상규제조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비교열위에 있는 교역 상대국들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있다. 무차별원칙은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 MFN)조항(GATT 제 1 조)과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조항(GATT 제 3 조)에 규정되어 있다.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적용할 경우 MFN 조항은 수입국이 일국에 적용하는 환경기준(environmental standard)을 타국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며 내국민대우에 있어서는 외국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환경정책이 국내상품에 부과하는 환경정책과 동일해야 한다. 결국 환경에 관련된 국제통상규제는 국내통상규제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모든 교역국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국내상품에 대한 적절한 규제조치가 없을 경우 외국상품에 대한 통상규제조치를 부과해서는 안되며 환경보호를 위한 통상규제도 국내상품에 이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sup>30)</sup> 수입된 석유와 석유제품에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1986년에 제정된 미국의 Superfund Act에 대해 캐나다, 멕시코 및 EU가 미국이 수입 석유와 국내산 석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세금을 차별적으로 부과한데 대해 GATT 패널은 수입 석유에 부과된 세금이 더 높기 때문에 GATT 제 3 조의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했다고 판결하였다.<sup>31)</sup>

## (2) 수량제한금지

GATT 제 11 조 1 항에서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영역 상품의 수입에 대해 또는 다른 회원국영역으로의 상품의 수출이나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해 조세 및 기타 부과금을 제외하고 달리 쿼터, 수출입허가 또는 기타 조치를 통해 이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을 설정하거나 유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수량제한의 철폐의무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동 조에서 예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주로 농산물과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목적을 위한 수량제한을 적용하기에는 다소 모순된 점을 안고 있다. 멕시코의 어선들이 해양포유동물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이 보호하고 있는 돌고래를 살상하는 채취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미국이 멕시코산 참치수

'WTO SPS 협정'; 제 2 조 1 항, 2 항, 'WTO TRIPs 협정'; 제 3 조, 제 4 조, 제 27 조 1 항 등이 있다.

30) Simonetta Zarrilli, *op. cit.*, p. 95.

31) Superfund GATT, BISD 34 Supp. 136(1987)

입을 금지한 참치수입규제사건에서 GATT 패널은 GATT 제11조에 위반된다  
고 판시하였다.<sup>32)</sup>

### (3) 환경보호의 필요성

GATT와 WTO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 통상규제는 인간, 동·식물의 생명이나 혹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한하고 있다.<sup>33)</sup> 1990년 태국의 담배 분쟁사례(The Thai Cigarette Case)<sup>34)</sup>에서 GATT 분쟁해결위원회는 '필요성'(necessary) 입증의 새로운 기준으로서 (i) GATT에 합치되는 다른 대안이 존재하지 않고 (ii) 수입규제조치가 목적달성을 위한 다른 대안에 비하여 최소 무역제한적이야 함을 제시하였다.<sup>35)</sup>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과 소비를 줄이기 위한 몬트리얼 의정서는 의정서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국제적 참여를 획득하는데 GATT의 규정상 대체될 만한 다른 규정들이 존재하지 않고 오존층 파괴물질 및 관련제품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통상조치를 차등화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무역제한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어 GATT 제20조(b) 항의 필요성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또한 WTO 협정에서도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통상규제조치는 최소한의 통상조치를 통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상의 통상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sup>36)</sup>

### (4) 천연자원의 고갈성

환경보호를 위한 통상규제조치가 합법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GATT 제20조

32) U.S. Restrictions on Imports of Tuna, Report of the GATT Panel(August 16, 1991), 30 I.L.M. 1594(1991).

33) GATT 제20조(b) 항, 'WTO TBT 협정' 제2조 2항, 'WTO SPS 협정' 제2조 1.2 항, 'WTO TRIPs 협정', 제27조 2항.

34) 1990년 미국과 태국간의 담배수입제한 및 내국세부과 사건에서 GATT 패널은 미국 제품이 태국제품보다 제품 브랜드 이미지가 높아 수입이 급증하자 미국제품이 태국제품보다 건강에 더 위해하기 때문에 태국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금지조치한 것이 정당하다는 태국정부의 주장에 대해 다른 대체수단(alternative measure)으로 광고금지, 금연에 대한 홍보, 재정조치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GATT 제20조(b)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35) GATT(1990)(BISD 37S/200).

36) 이에 대한 WTO 협정 조항으로는 'TBT 협정' 제2조 3항, 'SPS 협정' 제5조 4, 6 항, 'TRIPs 협정' 제27조 2항, '의제 21' 등이 있다.

(g)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i) 유한 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치이어야 할 것과 (ii) 통상조치가 국내의 생산 및 소비에 대한 제한과 연계되어 실시되어야 한다. 캐나다가 미가공 청어, 청어알 및 새끼 곰사연어(pink and sockeye salmon)의 수출을 금지하고 이를 생선을 가공하기 위해 우선 캐나다에 양륙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규칙에 대해 GATT 패널은 통상조치가 반드시 보존에 관한 '주요 목적'을 지녀야 하며 국내 소비 및 생산에 대해서도 이에 필적할 만한 규제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sup>37)</sup> 미국의 멕시코산 참치에 대한 수입규제사건에 대해 GATT 패널은 참치수입규제가 참치보존의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제 20 조 (g) 항의 요건에 부합될 없다고 판결하였다.<sup>38)</sup>

### (5) 투명성

GATT 제 10 조는 체약국들(contracting parties)이 수출입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에 대해 관련된 법률이나 규칙들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정의 운영과 관련한 통상조치를 채택하는데 있어 투명성(transparency)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GATT 제 20 조에서 통상규제조치가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국가간에 자의적이며 불공평한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조치를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도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된 자국의 주관적인 기준이나 최혜국대우 혹은 내국민대우에 반하는 어떠한 조치도 환경보호를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투명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위장된 규제조치라 할 수 있다.

## 3. 공정 및 생산방식(PPMs)에 대한 통상규제의 합법성

환경보전의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완제품뿐만 아니라 상품을 만드는 생산과

37) Canada-Herring and Salmon, GATT, BISD 35 Supp. 98(1988).

38) Tuna-Dolphin GATT Doc.21/R(Sept. 3, 1991); 1972년에 제정된 미국의 해양포유동물보호법(MMPA P.L. 92-522, 86 Stat. 1027)에서는 미 정부로 하여금 국내외의 직업어부가 해양포유동물을 우연히 살해하는 행위를 중지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MMPA는 상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미국 어부의 일정 한도치를 초과하는 비율(그물당 돌고래가 죽는 수)로 돌고래를 죽이는 국가로부터의 참치수입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88년 켈리포니아 환경단체인 *Earth Island v. Mosbacher* F.2d 1449, 1991). 한 연방 판사는 정부가 MMPA를 준수하지 못한데 동의했고 미국이 멕시코산 참치의 수입을 금지도록 하였다.

정에서 야기되는 환경문제에 관심이 증대되면서 공정 및 생산방식(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PPMs)에 대한 통상규제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상품특성에 상관없이 PPMs에만 기초하여 일방적인 통상규제를 취하는 것은 GATT 및 WTO 규범에 위배되고 국제환경협약에 근거하여 비가입국에 대해 통상규제를 하는 것도 합법성 여부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 (1) 제품관련 PPMs 규제

환경과 연관된 제품관련 PPMs(Product-related PPMs)는 소비에 관한 외부 경제(consumption externalities)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동종의 제품이라도 PPMs의 차이에 따라 제품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는데 동 제품이 수입국의 환경에 유해를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WTO 기술장벽협정(TBT 협정)은 환경보호를 위한 통상규제로 제품관련 PPMs에 대한 규제를 허용하고 있고 WTO 위생 및 검역협정(SPS협정)도 인간,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를 위해 PPMs의 규제가 가능도록 하고 있으며 몬트리얼 의정서에서도 규제대상물질을 함유한 상품에 대한 통상규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통상규제의 비차별성과 보호주의 요소가 배제되어야 하는 등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관할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환경보호를 위한 통상규제가 GATT 제20조의 예외조항의 정당성에 부합되는가에 대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 (2) 제품비관련 PPMs 규제

제품비관련 PPMs(Non-product-related PPMs)는 생산에 관한 외부경제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PPMs로 인한 환경유해가 제품자체에 의하여 이전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보호를 위한 제품비관련 PPMs에 대한 통상규제에 대해서는 GATT 및 WTO 규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통상규제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환경론자들이 환경적으로 유해한 방법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통상규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OECD의 무역환경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합법성의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제품의 특성과 관련이 없는 동종상품에 PPMs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통상규제를 허용할 경우의 문제점으로는 (i) GATT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종상품에 대한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배 (ii) 타국의 관할권내에서 이루어진 환경행위에 대해 통상규제조치를 취함으로써 환경정책에 의한 주권 침해 문제 (iii) 제품에 대한 PPMs의 환경오염여부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 (iv) 환경보존의 본래 목적이 아닌 자국산업의 보호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 존재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PPMs와 동종상품(Like Products)간의 관계를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WTO 환경위원회에서 선진국들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WTO가 동종상품의 개념이 상품의 본질과 관련된 전통적인 개념은 물론 환경유해정도에 의거하여 판단한 생산방식의 차이에 따라 상품을 차별화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동종상품으로 간주할 수 있는 PPMs의 인정범위 및 정당한 통상규제조치의 기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 V. 結論

환경보호를 위한 통상규제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원칙은 무역자유화를 목적으로 한 각종 규제가 환경보호와 관련이 있도록 하는 동시에 환경보호를 위한 통상규제조치가 무역자유화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환경보호와 무역자유화의 조화를 이루는데 있다.

국제환경협약중 몬트리얼 의정서, 바젤협약 및 CITES 등도 통상규제를 허용하고 있어 자유무역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GATT와 WTO의 원칙과 불일치하는 경우에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에 관한 국제통상규제의 합법성 문제에 대해 국제환경협약과 WTO 협정의 환경관련규정이 충돌할 경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f the Law of Treaties) 제 30조에 규정하고 있는 '신법우선의 원칙'이나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의해 우선순위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첫째, 국제환경협약 당사국간의 통상규제조치와 WTO 규정과의 합법성 여부는 국제환경협약의 당사자중 어느 일방이나 쌍방이 WTO 회원국이 아닐 경우 양당사자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환경협약이 우선하며, 국제환경

협약의 당사자 쌍방이 WTO 회원국일 경우에는 나중에 체결된 WTO규정이 우선한다. 둘째, 국제환경협약과는 별도로 비당사국에게 적용되는 일방적인 통상조치와 WTO 규정과의 합법성 여부는 분쟁당사자 모두 WTO 회원국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동시에 가입하고 있는 WTO 협정이 우선하고, 당사자 어느 일방이 WTO 비회원국인 경우에는 GATT 제 20 조의 예외조항에 부합해야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법성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국제협약당사국이나 비당사국에 대한 환경보호를 위한 통상규제가 GATT 및 WTO 규정에 합법성을 가질 수 있는 조건으로는 무차별원칙, 수량제한금지, 환경보호를 위한 필요성, 천연자원의 고갈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WTO 협정상 환경관련 무역규정은 GATT 보다 매우 진전된 것은 사실이나 참치수입규제사건에서 입증된 것과 같이 타국의 환경기준을 이유로 한 통상규제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WTO를 환경친화적인 협정으로 규정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였다. 결국 WTO 내에서의 환경보호와 무역에 대해서는 국제환경협약에서 규정된 통상조치들을 사안별로 WTO 체제내에 반영시키거나 WTO 협정내 환경관련 규제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협정규정을 어떻게 환경에 관하여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해 머무르고 있는 상태이다.

환경보호를 위한 통상규제에 관한 현행 GATT/WTO 환경관련 규정은 통합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개발과 환경의 조화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책이 요청된다.

첫째, 세계환경기구(World Environment Organization; WEO)의 설립이 요청된다. GATT가 무역자유화를 위한 비차별적 원칙에 의해 설립된 것과 같이 WEO는 오염자부담 원칙을 중심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은 물론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의 목표들을 통합할 수 있을 것이다. WEO가 기존의 환경협약을 흡수하여 환경과 관련된 규칙을 제정하고 실행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할 경우 GATT와의 무역과 환경분쟁을 조정할 수 있고 환경비용의 내면화를 추진할 수 있으며 국제환경협정의 체결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분쟁해결제도의 개정이 요청된다. 분쟁해결절차의 합법성의 위해서는 운용절차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환경보호단체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즉, 환경관련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

해서 환경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국내기관과의 사전협의, 비정부간 환경기구의 의견수렴 및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으며 환경문제를 다루는 GATT 패널로 제네바에 거주하면서 GATT 사절로 근무하는 전통적인 통상전문가 명부에 포함되지 않은 구성원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셋째, '동종상품'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이 요청된다. WTO 제품비관련 공정 및 생산방식(PPMs)에 대한 동종상품의 정의를 환경피해의 성격과 위치에 초점을 맞추고 상품과 과정상의 구분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새로운 환경차원의 합법성이 채택될 필요가 있다. 즉, 환경보전을 위하여 WTO가 PPMs 상품요건을 수용해야 하고 투명성확보를 위한 장치의 마련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GATT/WTO와 국제환경협약은 서로 다른 목표가 아니라 자유무역체제에서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동반자인 것과 같이 무역과 환경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동반자인 것이다.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도 환경관련 통상규제조치에 관련된 국제환경협약의 체결이나 WTO 내 환경과 무역에 관한 규범제정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의 환경외교를 강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환경기술개발, 에너지 절약 및 환경친화적인 산업으로의 구조조정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김필홍, “바젤협약과 그 영향 및 대응방안”, 환경보전, 1994.
- 노명준, 국제환경법, 박영사, 1997.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선진국의 환경장벽(II), 1994.
- 이영준, 국제환경법론, 법문사, 1995.
- 이호생, 환경과 무역의 연계, 정책연구 95-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5.
- 한택환, 무역-환경 관련과제와 우리나라의 입장, 정책연구 95-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5.
- Anderson, Kym, Effects on the Environment and Welfare of Liberalizing World Trade : The Cases of Coal and Food", Ch. 8 in *The Greening of World Trade Issues*, edited by K. Anderson and R. Blackhurst, Ann Arbor :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2.
- \_\_\_\_\_, *Social Policy Dimensions of Economic Integration : Environmental and Labor Standards*, NBER Working Press, 1992.
- Berg, Gerald C., "Dividing the Like-Product, Economics, the Law, and the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World Competition, Law and Economic Review*, Vol. 20, No.6, 1997.
- Besty Baker, "Protection, Not Protectionism :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and the GATT", 26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437, 1993.
- Birnie and Boyl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Oxford Press, 1993.
- Blackhurst, Richard, "International Trade and Domestic Environmental Policies in a Growing World Econom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a Changing World*, edited by R. Blackhurst et al., Geneva, 1977.
- Cameron, James and Jonathan Robinson, "The Use of Trade Provisions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and their Compatibility with the GATT", *Yearbook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Vol. 2, 1992.
- Chichilnisky, Graciela, "North-South Trade and the Global Environ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4, No. 4, September 1994.
- Esty, Daniel, *Greening the GATT: Trade, Environment, and the Future*, Wa-

- shington, D.C. :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94.
- GATT, Trade and the Environment, GATT Doc. 1529, 1992.
- Kohona, Palitha T.B., "The WTO and Trade and Environment Issues, Future Directions", *World Competition, Law and Economic Review*, Vol. 20, No.6, 1997.
- Levinson, Arik,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Industry Location: International and Domestic Evidence", in *Fair Trade and Harmonization*, Vol. 1: Economic Analysis edited by Bhagwaiti and Hudec, The MIT Press, 1996.
- OECD, Environmental Principles and Concepts, unpublished, Paris, 1995.
- Uimonen, P. and J. Whalley, *The Trade and Environment Issues after the Uruguay Round*, McMillan, 1996.
- Petersmann, Ernst Ulrich, *International and European Trade and Environmental Law after the UR*, Kluwer Law International, 1995.
-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ited Nations, 1992.
- WTO, Environment and TRIPs, WT/CTE/8.8 June, 1995.
- \_\_\_\_\_, Various Issues of WTO Trade and Environment Bulletin, unpublished, World Trade Organization, 1995, 1996.
- Zarrilli, Simonetta, "Trade and Environment, The Rules, Panels and Debate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orld Competition, Law and Economic Review*, Vol. 20, No.3, 1997.

## ABSTRACT

### The Legitimacy of Trade Measure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Lee, Shin Kyu

Trade and the environment emerged as a major and complex issue for trade negotiators in the final stages of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s. The agreements and other international measures employing trade measures and trade sanctions for achieving global environmental objectives are Vienna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1985), the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1987), The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1992),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1992), the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 and their Disposal(1992),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1975), the Rio Declaration, the Agenda 21, etc.

The texts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WTO) incorporated certain provisions which were designed to reflect some of the environmental concerns are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TRIPs),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TRIMs),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GATS), and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There is the possibility of conflict between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and WTO agreements granting waivers against trade measures and sanctions. This remains a possibility, especially between countries which are Member of WTO and which are not Members of the relevant multilateral environment agreements, and countries which are Members of

both the WTO and the relevant MEAs. Measures taken under the trade-related provisions of MEAs could potentially give rise to conflicts under obligations arising in WTO texts.

If the parties in dispute are WTO members while they are not members of MEAs, the WTO provisions can be granted a certain priority in terms of international norms and vice versa. When the parties concerned are both WTO members and MEAs, it will be rational to grant the WTO provisions a priority.

However, such measures should neither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countries where similar conditions prevail, nor create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Also any trade measures taken should be necessary to prevent developments in trade from endangering the effectiveness of an MEA and they should be proportional and least trade restrictive.

Key Words : Multilateral Environment Agreements, WTO, Trade Measures